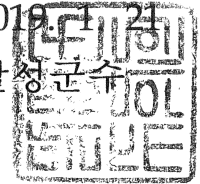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657
----------	------

제출일자: 2019. 11. 27
제 출 자: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슬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 근거 규정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시설의 위치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3조)
- 나. 이용시간 및 휴관일, 시설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다. 체험료 징수 및 감면, 예약,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수입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조례안: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의2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2019. 1. 3. ~ 2019. 1. 17.
- (6)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산2-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체험료”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시간 09:00 ~ 18:00(프로그램 이용 10:00 ~ 17:00)
2.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시설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산불방지, 치유센터 및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군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이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체험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 banking,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예약 및 체험료의 납부 등) 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한 날 당일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 2의 체험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위탁관리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0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험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제6조에 따른 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제6조제1항 관련)

대상자	체험료		비고
	개인	단체	
일반	10,000원	8,000원	※ 비 고 1. -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채란 10인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달성군민 체험료는 본인에 한하며, 일행이 달성군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달성군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 아펠리아 호텔 등에 숙박하는 자에 대한 체험료는 그 시설의 숙박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달성군민			
다자녀 가정			
장애인	8,000원	-	
국가보훈 대상자			
아펠리아 호텔, 자연휴양림, 비슬산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는 자	6,000원	-	※ 비 고 2.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2】

체험료 반환기준(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체험예약자 또는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 체험예정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 전액 환불 ○ 체험예정일 당일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50% 환불 ○ 체험예정일 당일 프로그램 시작 후 취소한 경우 : 미반환
2.체험예약자 또는 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체험료 전액 환불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